

부산현장활동가를 위한 노동안전보건 강좌 제3강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1.노동자 알권리



일시 : 2020. 11. 17. (화)

장소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2층 대강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기돈/ 유선경

산업안전보건법 총론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제도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총론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산업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의 소재 명확화

=> 산업재해 예방/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산업안전보건법 총론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제정~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현재
<p>-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 “6장 안전과 보건” 10개 조문으로 규정</p> <p>-1961년 근로보건관리규칙</p> <p>-1962년 근로안전관리규칙</p>	<p>-산업화에 따라 산업재해 대형화, 빈발</p> <p>-유해물질 대량 사용, 작업환경의 다양화에 따른 직업병의 발생 증가 : 1970년 대비 재해자수 3배/ 사망자수 2배/ 직업병환자수 6.2배</p> <p>-1981년 12월 31일 산안법 제정/ 공포</p>	<p>-1990년 제1차 산안법 전면 개정 (문송면노동자 수은중독 사망사건/ 원진레이온 이황화탄소 집단중독) – 노동자대표의 참여권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동수 구성 등 도입</p> <p>-2019년1월 제2차 산안법전면개정 (김용균노동자 사망사건)</p>

산업안전보건법 총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령 계층 구조도

제정	법률 체계	적용	관할	위반 구속력
국회	헌법	모든 국민	헌법재판소	
국회 (환노위 및 법사위)	산업안전보건법		법원	형사처벌 (벌금, 구속)
대통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 규제 심사 ▶ 법제처 심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시, 예규, 훈령	사업장	행정청	행정명령 (과태료, 업무정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총론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조

산업안전보건법	12장, 175조	}	➔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1장, 119조, 35개 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1장, 243조, 26개 별표, 105개 서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보건규칙)	4편(총칙 10장, 안전기준 8장, 보건기준 13장, 특수고용안전보건조치), 총 673조, 18개 별표, 4개 서식	}	➔ 안전보건매뉴얼
유해·위험작업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규칙)	12조문, 10개 별표, 7개 서식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행정규칙	11개 훈령, 26개 예규, 84여개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총론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기술성	-유해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90% 이상이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복잡다양성	-산업현장의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과 보건규범 -3개의 시행규칙, 11개의 훈령, 24개의 예규, 84개의 고시
강행성/규제성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책임 : 사업주의 의무로 강제화-> 불이행시 사법적 처벌 -노동자와 정부에 대해서도 의무와 책임 부여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총 12개 장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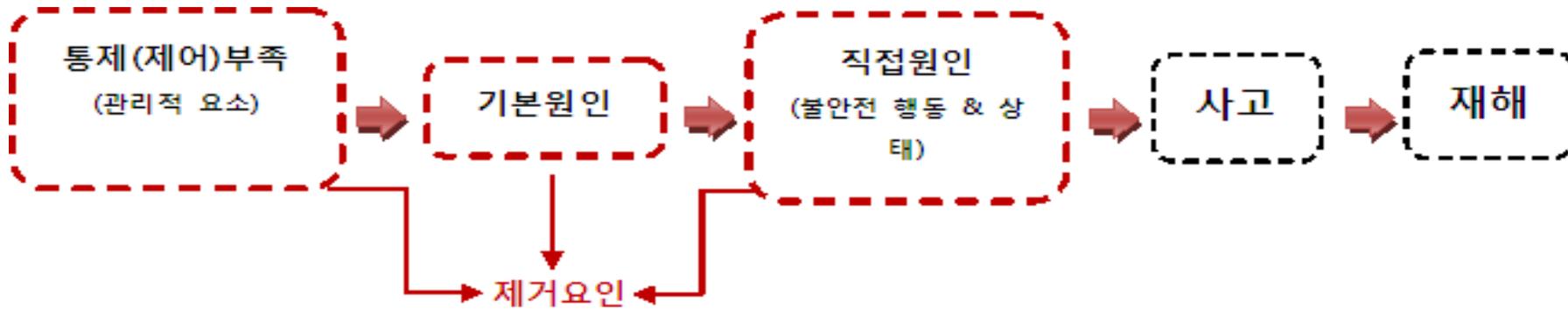
1장 총칙	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8장 근로자 보건관리
3장 안전보건교육	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10장 근로감독관 등
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11장 보칙
6장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12장 벌칙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안전이론과 산업안전보건법 _ 버드의 수정 도미노 이론



- 관리적 요소 : 안전보건관리체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유해·위험 방지조치
- 기본원인 :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 유해·위험물질 등에 대한 조치
- 직접원인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보건관리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제 1 장 총칙 : 산안법의 목적/ 정부, 사용자, 노동자의 책무를 규정

산안법의 목적

정부의 책무/ 사업주 등과 노동자의 의무

산재예방시스템 구축 / 산재발생 건수 등의 공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영상표시단말기 취급 근로자 작업관리지침,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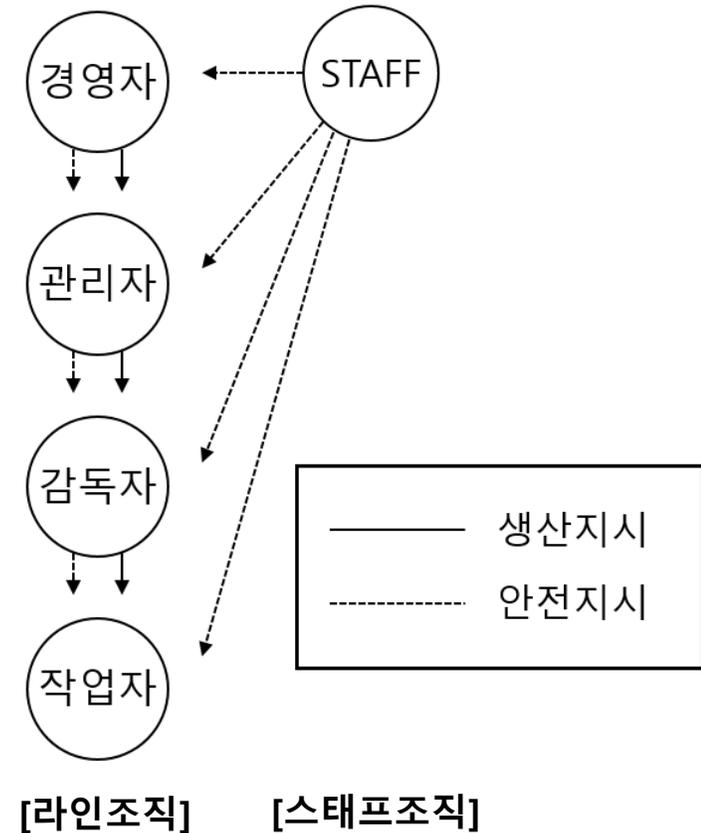
제 2 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 안전보건을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체계를 규정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라인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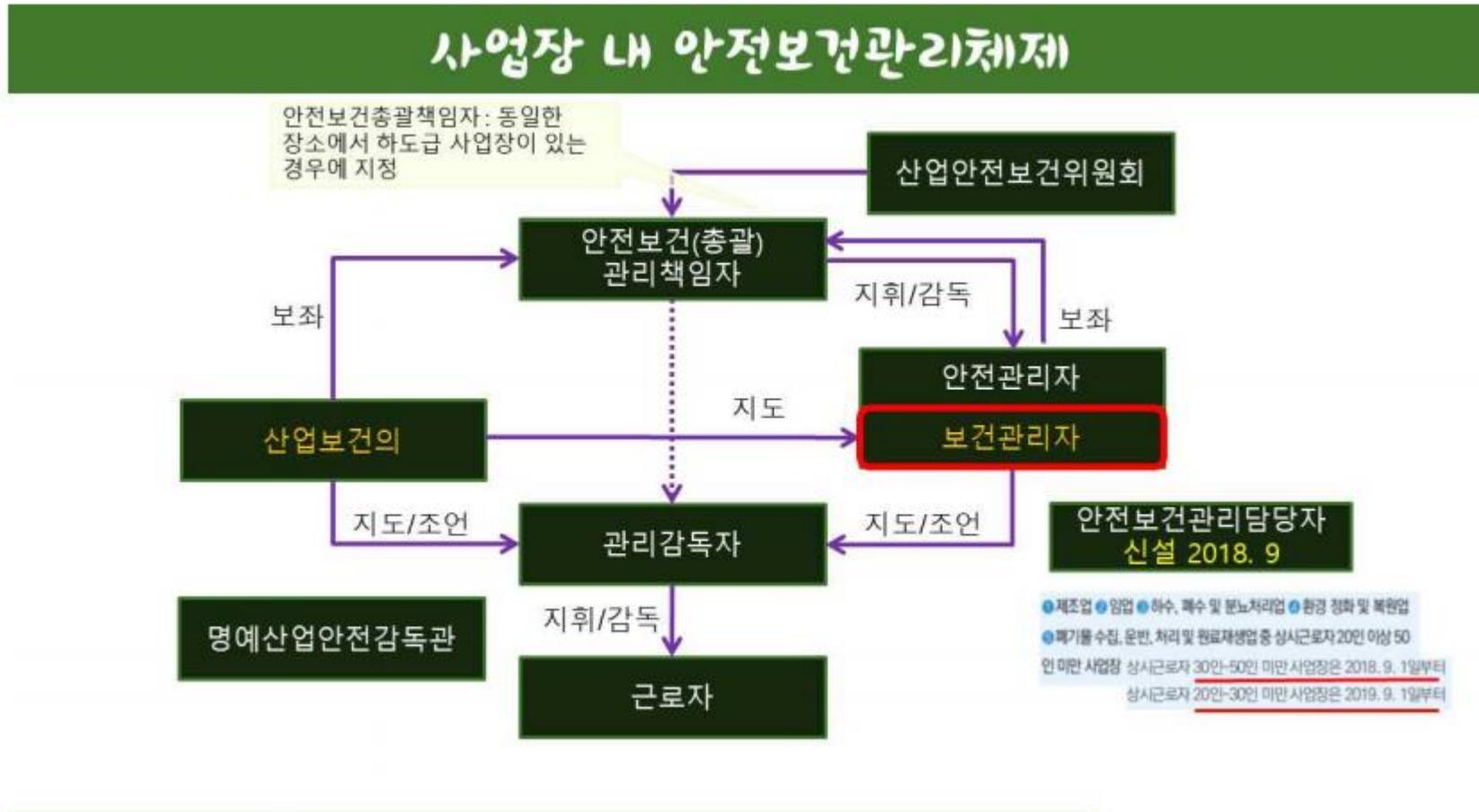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스태프조직)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동자대표)

-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제 3 장 안전보건 교육 : 노동자의 알권리 보장 및 관리자 기본역량을 위한 교육

-노동자 대상 교육 :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유해위험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건설노동자에 대한 기초교육

-관리자교육 : 안전보건 관리자 직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제 4 장 유해·위험 방지조치 : **산재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의무 (작업중지권 등)**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노동자 대표의 통지요청

- 위험성평가의 실시

-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 안전조치 / 보건조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공정안전보고서

- 안전보건진단 / 안전보건개선계획

- 노동자의 작업중지 / 사업주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발생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
중지 조치

- 중대재해원인조사 / 산재은폐 금지 및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제 5 장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 **도급 시 산재예방 및 책임범위를 규정**

-도급의 제한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의 승인/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도급인의 산재예방조치/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발주자의 예방조치/안전보건조정자선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노사협의체) 구성

-그밖에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예방

특고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가맹본부의 산재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제 6 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기계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방호조치/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유해위험기계 등의 조사 및 지원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제 7 장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유해인자에 대한 조치**

-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분류기준 / 노출기준 설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 / 물질안전보건자료 /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제조허가 등

-석면에 대한 조치

석면조사 / 석면의 해제제거/ 농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개괄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



제 8 장 근로자 보건관리 : **작업환경측정과 건강진단**

-근로환경의 개선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명령, 건강관리카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역학조사

노동자의 알권리

-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사업주의 의무)
- 안전보건교육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등
- 안전보건표지
- 노동자 대표의 통지요청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및 알림 (산안법 제34조)

사업주는 산안법과 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 널리 알려야 함 (과태료 : 1차50/2차250/3차500만원)

-화학물질 취급 공정 별 관리요령 게시(산안법 제114조 제2항)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공정별로 위험성, 주의사항, 적정 보호구, 응급조치나 사고 대처방법 등의 관리요령을 게시(벌칙없음)

-고객응대노동자에 대한 매뉴얼 제공(산안법 제41조/시행령 제41조)

사업주는 고객응대노동자가 문제상황을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마련하며 이를 교육해야 함 (벌칙없음)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안전보건관리규정 이란? (법 제25조~28조)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규범으로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게시해야 하는 규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가 있는 경우 산보위의 심의·의결/ 산보위가 없는 경우 노동자대표의 동의

: 벌칙 -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150/2차200/3차500만원 과태료/

작성 변경시 심의의결이나 동의 받지 않은 경우 1차50/2차250/3차 500만원 과태료

- 작성의무대상 사업장

일반 사업장 : 상시 100명 이상

유해위험의 정도가 낮은 사업장 : 상시 300명 이상

(농업, 어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및 보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내용

1. 총칙	가. 목적 및 적용범위 나. 사업주 및 노동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2.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 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의 직무 및 선임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 마. 작업지휘자 배치등
3. 안전보건교육	가. 노동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나.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등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다.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안전검사 또는 자율검사 프로그램

노동자의 알권리

4. 작업장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라.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제한 바.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 기타 안전관리
5. 작업장보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 나. 유해물질의 취급 다. 보호구의 지급 라. 질병자의 근로 금지 및 취업제한 등 마. 보건표지/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 기타 보건관리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시 처리 절차 및 긴급조치 나.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 수립 다. 산업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기록/관리 등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절차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8. 보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안전/보건 관련 문서의 보존 나. 기타 안전/ 보건 관련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다. 그 밖의 사항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 물질안전보건자료와는 다름**
 : 해당 작업장소의 특성/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 규정 및
 기술지침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조자 제공 기술적 정보
 등을 고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유해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 화학물질명 : PUREPLEX



경고

신호어

위험

▶ 유해성·위험성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해함
-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내용물·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취급상의 주의사항

- 피부, 눈, 및 의복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오
- 증기 또는 안개를 호흡하는 것을 피할 것
- 분쇄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 용기를 밀폐한 상태에서 건조하고, 시원하여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 직사광선을 피해 보관하십시오
- 보관온도 최저 -18℃ 최고 49℃

▶ 적절한 보호구

- MSOG : 호흡용보호구/보호장갑/보호복/보안경/안전보호구 착용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흡입시	피부 또는 눈 접촉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흡입했을 경우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시오. -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검진을 받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과 눈 밑을 물로 충분히 헹구십시오. - 자극증상이 나타나서 지속될 경우 의사의 검진을 받으시오. - 피부에 접촉 시 흡착재 (천, 플리스)로 덮어 내시오. -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어 내시오. - 오염된 의복은 재사용 전에 세탁하십시오.
먹었을 때	사업장 응급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두 잔의 물을 마실 것. - 구토를 유도하지 마시오. -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의 검진을 받으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 응급조치 요령 절차를 따르시오 - 응급환자 발생시 119(방재센터)로 연락하여 응급구조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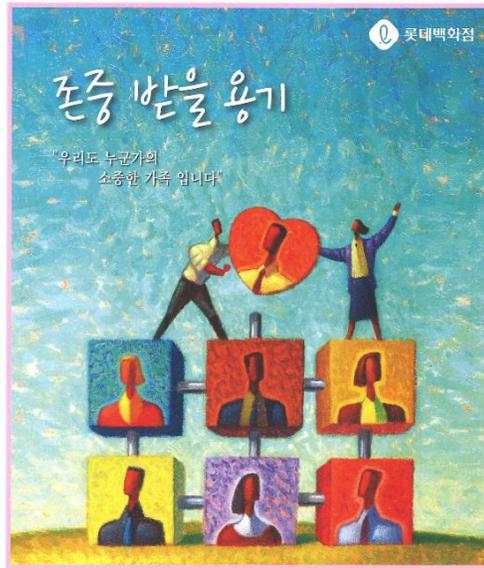
상세한 내용은 MSDS원본을 참조하십시오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정보 제공

○ 고객응대노동자에 대한 매뉴얼 제공 (시행규칙 제41조)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매일노동뉴스 노동, 새상으로 꽃피우실 힘



▲ 감정노동에 지친 사원들을 위한 킴플레인 응대 가이드 고객응대 매뉴얼 사진

롯데백화점은 이러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대응과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고객 응대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으며,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른바 '진상' '갑질' 고객에게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고객과 노동자 간 문제가 발생할 때 대처방법을 담은 고객응대업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8일 이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조치가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그런데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기업들이 마련한 고객응대 지침이 폭언이나 폭행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현장을 벗어나기에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유해위험작업자에 대한 특별교육
- 건설업기초안전교육
- 특수고용형태노동자에 대한 교육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노동자)
- 화학물질취급노동자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과태료 : 교육대상 1명당 1차 10/2차20/3차50만원)

***교육시간** : 매분기 6시간이상/ 사무직+판매업무직접종사자 매분기 3시간이상)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과태료 : 교육대상 1명당 1차 10/2차20/3차50만원)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일용직노동자 1시간 이상

***교육내용**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과태료 : 교육대상 1명당 1차 10/2차20/3차50만원)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일용직노동자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채용시 교육과 동일)**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특별교육 (특고노동자도 동일) (과태료 : 교육대상 1명당 1차 50/2차100/3차150만원)

*교육시간

-**일용직노동자 제외 노동자** : 16시간 이상- 최초4시간+3개월내 12시간/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단기간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작업-연간 총 근로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일용노동자** : 2시간이상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노동자** : 8시간이상

*교육내용

-채용시 교육내용 + 각 작업별로 개별내용으로 교육 (각 40호)

1.고압실 내 작업/ 2.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작업 /4.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방법40.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건설업기초안전교육 (과태료 : 교육대상 1명당 1차 10/2차20/3차50만원)

*교육시간 : 4시간 이상

*교육내용

- 공통교육 (1시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내용 (건설 일용자 관련 부분)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교육내용

-교육대상별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재해사례와 예방대책) (2시간)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인과 건강관리 (1시간)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특수고용형태노동자에 대한 교육 (최초 노무제공 시)

(건설기계,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노동자)

***교육시간** : 2시간 이상/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1시간 이상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사고발생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재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교육시간**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음/교육받은 시간 만큼 정기교육시간 등이 면제)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교육



교육방법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규정)

-**집체교육** :교육전용시설 또는 기타 교육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는 제외)에서 실시하는 교육

-**현장교육** :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 /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주관아래 실시

-**인터넷원격교육** :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관리 등이 웹상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 특별교육의 경우 교육시간의 1/3이 넘어서는 안됨

* **정기교육 분할 실시 가능 => 쪼개기 교육의 가능성**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법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서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해당 노동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MSDS)란?

: 화학물질을 팔거나 넘기는 자(양도 또는 제공자)가 화학물질을 제공받거나 구입하는 자(화학물질 취급 사업주 등)에게 주어야 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안내서 또는 안전 사용 설명서

작성의무자 : 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자 (2021년 1월 16일부터 제조업자, 수입업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물리적 위험성 또는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해당하는 물질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 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화학물질	물리적위험성	폭발성물질, 인화성 가스, 인화성액체, 인화성고체, 에어로졸, 물 반응성물질, 산화성가스, 산화성액체, 산화성고체, 고압가스, 자기반응성물질, 자연발화성 액체, 자연발화성 고체, 자기발열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 부식성 물질
		건강 및 환경유해성	급성독성물질,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물질, 심한 눈 손상성 또는 자극성 물질, 호흡기 과민성 물질, 피부 과민성 물질,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 특성표적장기 독성물질(반복노출), 흡인 유해성 물질, 수생환경유해성물질, 오존층유해성물질
	물리적인자	소음, 진동, 방사선, 이상기압, 이상기온	
	생물학적인자	혈액매개 감염인자, 공기매개 감염인자,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인자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내용 (총 16개 항목)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4)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제품명,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공급자 정보(공급자 정보는 회사명, 주소, 긴급전화번호 기재.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MSDS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 기재.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 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 기재)
2.유해성·위험성	유해성·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표시), 기타 유해성·위험성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 함유량(%)
4.응급조치 요령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 흡입했을 때, 먹었을 때,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5.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인체 보호에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정화 또는 제거 방법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7.취급 및 저장방법	안전취급요령,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 포함)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적절한 공학적 관리, 개인 보호구(호흡기 보호,눈 보호,손 보호, 신체 보호)
9.물리화학적 특성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냄새, 냄새 역치,pH,녹는점/어는점,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인화점, 증발 속도, 인화성(고체, 기체),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증기압,용해도,증기밀도, 비중, n 옥탄올/물 분배계수,자연발화 온도, 분해 온도, 점도, 분자량
10.안정성 및 반응성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피해야 할 물질,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11.독성에 관한 정보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건강 유해성 정보(급성 독성_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호흡기 과민성, 피부 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 표적장기 독성_1회 노출, 특정 표적장기 독성_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 ※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합쳐서 함께 기재할 수 있음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태독성,잔류성 및 분해성,생물 농축성,토양 이동성, 기타 유해 영향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13.폐기 시 주의사항	폐기방법 및 폐기 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 포함)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유엔 번호, 유엔 적정 선적명,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15.법적 규제현황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6.그 밖의 참고사항	<u>자료의 출처</u> , 최초 작성일자, <u>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u> , 기타

나. 잔류성 및 분해성	
잔류성	자료없음
분해성	자료없음
다. 생물농축성	
농축성	자료없음
생분해성	자료없음
러. 토양이동성	자료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자료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자료없음
나. 폐기시 주의사항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2212
나. 적정선적명	석면(황석)BLUE ASBESTOS(crocidolite) or B R O W N ASBESTOS (amosite,mysorite)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9
러. 용기등급	II
마. 해양오염물질	비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화재시 비상조치	F-A
유출시 비상조치	S-A

15. 법적규제 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금지물질 직업환경측정대상물질 (측정주기 : 6개월)(석면분진)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진단주기 : 12개월)(석면분진)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금지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해당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기타 국내 규제	해당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모터드당형악물질)	해당됨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형악물질)	해당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Carc. 1A STOT RE 1
EU 분류정보(위험분류)	H350 H372 **
EU 분류정보(안전분류)	해당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IPCS(성상)	
IPCS(타. 용해도)	
IPCS(하. 비중)	

ChemIDPlus(머. 분자량)
NITE(생식세포변이원성)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NITE(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나. 최초작성일	2016-04-30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회
최종 개정일자	
러. 기타	
자료없음	

-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지(도·소재업지))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 ◎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아울러, 공단의 MSDS는 상업적 용도 등의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위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이 자료를 수정하여 제공하는 권한은 안전보건공단에 있으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305-38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30,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화학물질센터
- 전화 : (042)869-0319(대표전화)

Copyright © by KOSHA. All rights Reserved.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의무 (법 제114조 제1항)

- 사업주는 MSDS를 MSDS 대상 화학물질 취급 공정이 있는 장소에 비치해두어야 하며, 작업장 안에 노동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함
- 대상물질 1종당×대상 작업장 1개소 당으로 위반 개수 산정 (과태료 1차100/2차200/3차500)
- MSDS의 분량이 많거나 내용 확인이 복잡해서 서류가 아닌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함 (시행규칙 167조 1항)
- 사업주는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가 MSDS 내용을 확인하는데 있어서 해당 전산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음.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의무 (법 제114조 제2항)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함. (벌칙없음)

- 1.제품명
- 2.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 3.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4.적절한 보호구
- 5.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법 제114조 제3항)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a. MSDS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노동자를 배치할 경우, b. 새로운 MSDS 대상 화학물질을 도입하는 경우, c. MSDS에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노동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 (벌칙 : 대상자 1명당 1차 50/2차100/3차300만원)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교육시간 (별도로 정해진 바 없음)**

***교육내용**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취급상의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적절한 보호구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MSDS 대상 화학물질 용기, 포장에 경고표시 (법 제115조)

- MSDS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와 사업주는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매입 시 용기에 이미 경고표지가 되어 있다면 추가로 할 필요 없으며, 화관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경고표시가 된 경우에도 별도 경고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화학물질을 옮겨 담을 때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한다면 이 경우에도 경고표시 의무 없음.

-대상물질 1종당 × 사업장 1개소 당 위반 개수 산정 (과태료 1차 50/2차 100)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MSDS 대상 화학물질 용기, 포장에 경고표시 (법 제115조)

-경고표시의 내용

1. 명칭 : MSDS 상의 제품명
2. 그림문자 : 고시 별표2에 해당하는 것 표시
3. 신호어 : "위험" "경고" 등 문구. 고시 별표 2에 해당하는 것 모두 표시
4. 유해·위험 문구 : "폭발성" "인화성" "삼키면 위독함" 등의 문구
5. 예방조치문구 : "습기를 방지하십시오" "임신·수유기간에는 접촉하지 마시오" 등의 문구
6. 공급자 정보 : MSDS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 대상물질 1종당×대상 작업장 1개소 당으로 위반 개수 산정 (과태료 1차50/2차100/3차300)

ACETYL ACETONE (아세틸 아세톤)

당 밀폐용기내의 물질을 사용하기 전 아래의
주의사항 및 **MSDS** 내용을 꼭 숙지해 주세요.



(신호어) : 위험

〈유해 / 위험문구〉

- 인화성 액체 및 증기
- 삼키면 유독함
-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흡입하면 유독함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 문구〉

1. 예 방

- 열·스파크·화염·고열로부터 멀리하십시오.
- 금연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십시오.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십시오.

2. 대 응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으십시오.
-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3. 저장 / 취급시 주의항

-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십시오.

4. 폐 기

- 관련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한 분류 : 4류 2석유류(34℃)
- 위험물의 위험등급 : III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수량 : 1000L(비수용성)
- 운송에서의 위험성 : 3

화 기 엄 금

공급자정보

BENGBUNG RESEARCH
INTERNATIONAL CO.,LTD.

드럼용기

NO.1-101,A
BUILDING,CHENGUANG
GARDEN,BENGBU,ANHUI,CHINA

긴급 연락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 규정에 의한 경고 표지

명 칭 위험/경고

유해위험문구 인화성가스를 흡입하면 치명적임
암을 일으킬 수 있음

예방조치문구

-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십시오
- 보호장갑, 보안경을 착용하십시오
-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취급하십시오
-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로 씻으십시오
- 흡입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십시오
-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십시오



공급자정보 : ○○ 화학, 000-0000-0000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영업비밀' 정보에 대한 일부 비공개 (산안법 제112조)

-MSDS 작성·제출 과정에서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적지 않을 수 있음.

-승인된 날로 부터 5년간 MSDS에 '3.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항목을 대체자료로 표기할 수 있음.

-조사결과 영업 비밀 인정 제외대상(금지,허가, 관리물질 및 화관법 상의 유독물질로 판명)이 되거나 연장승인 신청을 안하면 승인 불가-> 그 외의 경우 5년 단위를 계속 연장 가능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영업비밀'이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을 것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경제적 유용성)”

“해당정보를 상당한 것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을 것(비밀관리성)”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영업비밀'로 비공개 할 수 없는 물질

-제조 등 금지물질 (법 제117조, 시행령 87조의 7종 물질 및 환경부 고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4 금지물질(60종))

-제조 등 허가대상물질(법 제118조, 시행령 88조의 12종 물질)

-관리대상 유해물질(안전보건규칙 별표 12의 유기화합물 117종, 금속류 24종, 산·알카리류 17종, 가스 상태 물질 15종)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상의 유독물질(환경부, 유독물질 지정고시 별표의 969종)

노동자의 알권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영업비밀'로 비공개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12조 제10항/영 제165조)

1. 의사 또는 사업장 산업보건의가 화학물질 때문에 노동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위해 MSDS에 비공개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노동자대표** 또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 포함)나 산업보건의가 해당 화학물질 때문에 노동자에게 직업병 등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하는 경우
3. **사업장의 노동자대표** 또는 역학조사기관이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노동자에게 발생한 직업병의 원인 규명을 위해 MSDS의 비공개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요구하는 경우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 (법 제37조)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 및 보건의를 고취하기 위한 사항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안전보건표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함.

-이주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이주노동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함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독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38-40조
태, 색채, 형태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표지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502 석면취급하체 작업장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폐제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추가예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들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노동자의 알권리

안전보건표지



안전보건표지 (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 설치 또는 부착 의무 위반은 대상 장소 당 발생/ 부착할 장소가 50개군데인데 그 중 20개만 부착했으면 30개의 위반이 발생

- 설치 부착 대상 1개소 당 1차 10만원/2차 20만원/3차 30만원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노동자 대표의 통지요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라고 명령한 안전보건진단결과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가 제출하라고 명령한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원청이 1차 하청과 구성하도록 정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상황, 원청의 순회 점검, 하청과 합동점검, 하청업체들(관계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지원과 안전보건교육실시 확인, 발파작업이나 화재·폭발·붕괴·지진 발생장소에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훈련 및 위생시설 협조 등 원청으로서 지켜야할 의무 이행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1. 사업장 산재 예방계획의 수립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3. 안전보건교육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 점검·개선
5. 건강진단 등 노동자 건강관리
6. 중대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7. 산재 통계 기록 및 유지
8. 유해위험기계 설비 등 도입 시 안전조치
9. 기타 사업장 안전보건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노사 동수의 기구
즉, 사업장의 안전보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한 기구임

▶ 구성

노사 각 최대 10명씩 총 20명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노사 동수로 구성

▶ 설치의무 사업장 (시행령 별표9)

일반사업장 100명 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50명 이상/유해위험 정도가 적은 사업장 300명
이상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안전보건진단결과에 대한 사항 (과태료 1차30/2차150/3차300만원)

▶ 안전보건진단이란?

-추락·붕괴·화재폭발·유해위험물질 누출 등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안전을 진단받을 것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함

-안전보건진단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 받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

-노동자대표는 안전진단에 입회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를 거절할 수 없음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안전보건진단결과에 대한 사항

▶ 안전보건진단 대상 사업장

-그 사업장 산재율이 동종 평균 산재율의 2배 이상인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단 노동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시행령 별표 14)

종합진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경영·관리적 사항에 대한 평가<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적정성나.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의 적정성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역할 등 근로자의 참여 정도라. 안전보건관리규정 내용의 적정성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ol style="list-style-type: none">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시행령 별표 14)

<p>안전진단</p>	<p>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가. 기계·기구 또는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성 나.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 등에 의한 위험성 다. 전기·열 또는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라. 추락, 붕괴, 낙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위험성 마. 그 밖에 기계·기구·설비·장치·구축물·시설물·원재료 및 공정 등에 의한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안전 관련 사항</p>
<p>보건진단</p>	<p>2.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 원인(산업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작업조건 및 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측정 및 분석 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온도·습도·환기·소음·진동·분진,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 또는 위험성 5. 보호구, 안전·보건장비 및 작업환경 개선시설의 적정성 <- 보건 관련 사항 6. 유해물질의 사용·보관·저장,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근로자 교육 및 경고표시 부착의 적정성 7. 그 밖에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 유지·증진 등 보건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및 긴급 정밀 안전보건진단명령 조치

사고원인 조사착수, 범위반 사실 확인시 관련자 엄중 처벌 예정

관악고용노동지청, 노량진역 사망사고 작업중지 및 안전보건 진단 명령

편집부

기사입력 2017/06/29 [05:50] | 최종편집

김국제 대표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동부제철(주) 당진공장 협력업체에 작업중지 및 긴급 정밀 안전 보건진단명령 조치

양승용 기자 | 승인 2015.03.13 11:06 | 댓글 0



사고원인 조사 착수, 범위반 사실 확인시 관련자 엄중 처벌할 예정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3월 7일(토) 「동부제철(주) 당진공장」의 냉연 코일 야드장에서 50톤 크레인 정비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10미터 아래 지상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장소인 ACV(코일 야드장) 공정 전체에 대하여 3월 9일(월)부터 작업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공장 전체 공정에 대해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받도록 조치했다.

특히, 안전보건진단은 3월 11일(수)부터 약 2주간에 걸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민간기관 전문가 등 15명이 투입되어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천안지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는 한편,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사고 관련자를 소환하여 사고원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철저한 사고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공사 관계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쓴소리 단소리

사설칼럼 | 기자수첩 | 뉴타발인대

- 날카롭게 고집어내기
- 조선인과 한국인
- 전환하기
- 붉은 교황 프란치스코 中공산당과 뒷거...
- 미합중국의 대선 208만 5천표(1.4%)의...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이란?

-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만들어 산재예방을 실행하게 하는 제도
- 사업주는 산안보위 심의를 거쳐 안전보건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
- 산안보위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대표가 개선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한을 가짐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과태료 1차30/2차150/3차300만원)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대상 사업장**

- 동종 규모별 산재율보다 산재발생율이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유해인자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

- 산재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재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상시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시 산안보위 심의를 거치거나 노동자대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함

(과태료 1차50/2차250/3차500)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과태료 1차30/2차150/3차300)

▶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여 작업환경에 기인한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와 그 분석, 평가하는 것

-작업환경측정 시 노동자 대표가 참석을 요구하면 참석시켜야 함 (과태료 500만원)

노동자의 알권리

노동자대표의 통지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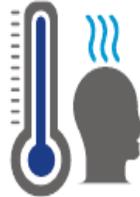
▶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설, 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 측정대상 유해인자

각종 화학물질(유기용제, 금속류, 산·알칼리, 가스, 금속가공유 등)을 취급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소음, 분진, 고열 등이 발생하는 작업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됩니다.

측정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92종의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 참조]

▶ 측정주기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작업환경측정 대상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실시하고 이후 6개월 주기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 실시방법



▶ 위반시 벌칙

-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노동안전권리찾기

1. 우리 회사의 산안법 적용은 어디까지?

1) 사업종류

통계분류포털

통합검색



경제부문

사회부문

보건부문

상담센터

커뮤니티

정확한 분류는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신뢰받는 통계분류포털!

검색 사용자 가이드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



KSCO

한국표준직업분류



KCD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F 한국표준건강분류



한국표준
무역분류



한국표준
목적별지출분류



한국표준
교육분류



특수/일반
국제분류



행정구역
분류

1. 우리 회사의 산안법 적용은 어디까지?

2) 상시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 ✓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 상시근로자라 함은 일정기간내의 고용자 연인원수를 일정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얻어지는 수

1. 우리 회사의 산안법 적용은 어디까지?

1.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산안법 시행령 [별표1])

: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규정 의무 여부 확인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

로자 수(제34조 관련, 산안법 시행령 [별표9])

: 산보위 설치의무 여부 확인

1. 우리 회사의 산안법 적용은 어디까지?

1)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적용 여부 확인(시행령 별표1, 시행규칙 별표2)

② 적용된다면

➤ 관리감독자 선임의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선택

	해당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시행령 별표2
안전관리자		시행령 별표3
보건관리자		시행령 별표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시행령 §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시행령 별표9

Q. 우리 사업장은 출장소로 되어 있고 본사가 별도로 있어서 본사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이면 출장소에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나요?

A.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해야 하고,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부 질의회시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7.30.)

- 다만, 동일한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양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이 보다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부분은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출장소, 사업소, 지점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본사)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고용부 질의회시 산재예방정책과-4065, 2012.7.30.)

1. 우리 회사의 산안법 적용은 어디까지?

2) 안전보건관리규정 : 적용 여부 확인(시행령 [별표]1)

작성, 변경시 절차 준수 확인, 게시여부 확인

3) 물질안전보건자료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여부, 교육실시, 업데이트, 경고표지 확인

4) 안전보건표지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공유해봅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해도 근로자대표는

-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가 의결한 사항
 2.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도급인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해도 근로자대표는

-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47조(안전보건진단)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해도 근로자대표는

- 시행규칙 제189조(작업환경측정방법)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 제125조(작업환경측정)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 포함)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체제 적용 사업장이 아니라해도 근로자대표는

-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어떻게 선출할 것인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0. 10.16. (금) 10:20 이후	총 6 쪽	
배포일시	2020.10.15. (목)	담당부서	전문위원실
담당자	김미영 전문위원(02-721-7143)	홍보부서	이세종 전문위원 (02-721-7132)

노사정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방안 합의

-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식과 활동 보장 명시 -
- 취약근로자 이익보호와 사업장내 민주적·안정적 노사관계 전환 계기 -

산보위 설치 의무 사업장이 아니라해도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 보건등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협의 사항) ①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실 : 교육서비스업을 구내식당업으로 변경 판단

취대한 어정,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고 용 노 동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시달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 판단 지침 1부. 끝.

▲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학교급식은 기관구내식당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전체 적용대상이라는 내용을 재확인하는 공문을 지방관서에 하달했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

<p>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p> <p>가. <u>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p> <p>나. <u>교육 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제외한다)</u></p>	<p>- 제2장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14~24)</p> <p>- 제2장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25~28)</p> <p>- 제3장 안전보건교육 (§29~33) (다른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p>
--	--

사무직 종사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무직의 정의

사무직이란

- 기업전략 조직을 기획 관리 지원하는 업무를 통해 소속 사업체의 운영을 통제 관리하고, 직접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내근직을 의미하는 게 아님**

**Q.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통합관리 등을 영
위하는 회사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 직무 중 '기술직군', '서비스직군' 및 웹디자인직군의 업무내용(SW 개발, UX디자인)은 '직접적인 산업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며 경영지원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보이며

-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 등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이러한 경우 귀사 직원 중 절대다수인 약 93%(798명/855명)가 사무직이 아닌 근로자이므로, 귀사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621, 2019.2.11.)

2. 우리 회사에서 자주 일어나는 재해(사고, 질병등) 3가지

3. 왜 그런 재해가 자주 일어날까?

4.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은? 우리 회사 교육에서 빠져 있는 내용은?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함께

공유해봅시다.